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77조, 같은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1C 복지화·다원화시대에 맞벌이 부부, 핵가족화 현상심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으로 남녀 공동 보육의 책임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 증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1개소(총15개소)만 선정하여 최첨단·최양질의 영아전문보육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부산에서는 우리구가 선정됨으로써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로 취득코자함.

- 취득대상 재산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m ²)	m ² 당공시지가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합계	5필지	563	-	383,285	-
다대동 120-28	대지	278	687	190,986	부산광역시
다대동 120-55	잡종지	72	769	55,368	
다대동 63-19	임야	81	639	51,759	
다대동 63-4	임야	52	581	30,212	
다대동 1435	도로	80	687	54,960	건설교통부

3.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영아전문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 예정부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영구임대아파트등 대단지 아파트 지역인 다대지역내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부지로서 신축 관련 예산 907,046천원중 국·시비가 650,000천원, 구비 257,046천원으로 국·시비는 올해 결산추경시 내시 예정임으로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